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 완화 등〉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6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예외 신설	3
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 완화	8
3.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주식 보유 요건 완화	16
4.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20
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방식 및 사업화 지원비용의 수취 근거 등 명시	23
6.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에 민간기업 등 포함	29
7.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정비	3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30.
3. 회 부 일 : 2025.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현재까지 기술지주회사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 이전·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원책이 부족하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등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및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등).

Ⅲ. 검토의견

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예외 신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① ~ ③ (생략)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조직으로 본다. 1. 기술지주회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④ (생략)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현행법 제11조제1항¹⁾에서는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³⁾(이하 “기술지주회사”)나, 대학이나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 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⁴⁾ 등의 설립·운영을 통해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에 전담조직을 설치⁵⁾하도록 하고 있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안 제11조제4항 각 호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 수행 기관

1.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현행법 제21조의3)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소유를 통해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및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소유를 통해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4. **산학협력단**(「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 대학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업무 포함)를 관장하는 법인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 5) 2023년 실태조사 기준으로 조사에 응답한 133개 대학 중 109개의 대학(82%)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며, 이 중 83개 대학(62.4%)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부서와 기술지주회사를 중복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2024년(2023년 대상)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태조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보고서).

또한, ‘2024년(2023년 대상)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이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비율은 69.8%에 불과하여 현행 제도가 전담조직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술이전·사업화 전담부서 보유 현황

구 분		사례수	기술이전·전담부서 보유 현황(%)	
			보유	미보유
전체	2019년	284	60.2	39.8
	2020년	280	65.7	34.3
	2021년	281	68.7	31.3
	2022년	281	67.6	32.4
	2023년	275	69.8	30.2
2023년	공공연구소	142	58.5	41.5
	대학	133	82.0	18.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담조직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기능의 조직이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 예외 규정이 신설

되면, 공공연구기관이 자체 여건과 역량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 형태를 선택·운영할 수 있게 되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전담조직과 기술지주회사 등 기관 간의 역할 중복 문제와 전담조직의 형식적인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임.

참고로 정부는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22.12)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전담조직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공공연구의 사업화 투자 유인·역량 확충>

□ (조직 운영) 공공연구가 역량에 맞게 내·외부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운영 자율성 강화

- 공공연구 내부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규제 폐지(기술이전법 제11조)
- 공공연구 내부부서, 출자회사, 민간전문회사(기관) 등을 지정해 기술이전·사업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해외 사례) ①내부부서: 독일 프라운호퍼,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 등
②출자회사: 이스라엘 와이즈만, 영국 옥스퍼드·캠브리지, 일본 동경대 등
③민간전문회사: 독일 헬름홀츠, 영국 BTG(British Technology Group) 등

자료: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22.12)

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 완화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명칭을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에서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변경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중 보유기술을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주식 비율을 ‘50% 초과’에서 ‘30% 초과’로 완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및 제21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 <u>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u> ”(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 <u>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u> ----- ----- ----- ----- ----- ----- -----

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1. ~ 14. (생략)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생략)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4. 보유기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③ (생략)

④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신설>

-----.

-----.

11. ~ 14.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100분의 30-----
-----.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거나 설립하려는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현행법은 제2조6)에서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제21조의37)에서 공공연구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② 임원의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미해당, ③ 일정기준 이상의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 ④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⁸⁾ 보유 등을 그 설립요건으로 하여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보유기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8) 녹색기술과 첨단기술의 개념

(녹색기술)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

(첨단기술) 산업부통상자원부장관이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시하는 기술(「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이러한 기술지주회사제도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으로써 개발·보유한 기술의 이전·사업화가 자체 전담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던 기존 체제에서 발생하는 한계점⁹⁾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도입(2010년 4월)된 것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사업화의 선순환구조(연구개발→지식재산권 확보→기술사업화→수익금 환류)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형태의 기술사업화 모델임.

그런데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기술지주회사의 보유기술 제한(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 및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공공연구기관의 의무 보유지분율(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등의 엄격한 요건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¹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명칭을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에서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변경하고, 기술지주회사의 보유기술을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그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촉진되도록 하는 한편,

9)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적극적인 추가 기술개발이나 지원 등의 한계로 인해 기술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한 문제 등 발생

10) 기술지주회사 설립 의향기관의 22%가 기술분야 제한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제약 요인으로 응답하였고, 기 설립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현행법의 기술지주회사와 동일한 주식보유 요건)의 38%가 주식보유 요건을 기술지주회사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하였음(2020년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수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주식 비율을 ‘50% 초과’에서 ‘30% 초과’로 완화하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운영 부담 완화와 외부 투자유치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과 동일한 설립 목적의 기술지주회사를 규정하고 있는 타입법 제11)¹¹⁾를 살펴보면, 기술지주회사의 보유기술에 대해서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모두 현행법과 달리 보유기술의 범위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설립주체의 기술지주회사 의무 보유지분율에 대해서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여 현행법보다 완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술지주회사 유형별 현황(현행법과 타입법 제의 비교)

명칭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설립 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제36조의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

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현행법보다 먼저 기술지주회사제도를 도입(2007년)하여 시행 중임.

명칭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도입시기 및 소관부처	2010. 4. 산업통상자원부	2007. 8. 교육부	2007. 1.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주체	공공연구기관	대학(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대학, 공공연구기관 (대학은 지주회사 형식 불가)
조직 성격	상법상 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
운영 형태	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 지배	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 지배	직접 사업화 또는 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 지배
보유기술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의무 보유 지분율	발행주식의 50% 초과 보유	발행주식의 50% 초과 보유	발행주식의 10% 이상 보유
운영 현황	없음	84개사	5개사 (기술지주회사 유형)
자회사 현황	없음	약 1,700개사	약 150개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이처럼 기술지주회사의 보유기술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는 타입법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보유기술 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설립주체의 기술지주회사 의무 보유지분율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에도 현행법과 동일한 요건(50% 초과 보유)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외부 출자 비율이 확대되는 경우 설립주체의 보유지분율이 감소하여 의무 지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¹²⁾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¹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주식 비율을 ‘30% 초과’로 완화하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신규 설립이 촉진되고, 외부투자금의 확보로 기술사업화의 실행력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외부 출자 근거와 관련하여 특히 지자체의 경우 「지방재정법」¹⁴⁾에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외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에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출자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정부는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22.12)에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유치, 투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등 기술지주회사의 보유기술 제한을 폐지하고, 출연연 등

12)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부산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의 경우 부산테크노파크의 출자 비율이 과다하여 2022년에 출자받은 금액을 전액 반납한 바 있음.

13) 이와 관련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 주체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음(2203114, 조정훈의원대표발의, 2024.8.23.).

14)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의 기술지주회사 의무 지분율을 완화하며, 외부 출자 근거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공공연의 첨단기술 창업 요람化>

□ (규제 완화) 기술지주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설립·운영 규제 완화 추진

* 출연연 등 - 첨단기술지주(근거: 기술이전법), 대학 - 산학연기술지주(근거: 산학협력법)

○ 설립규제를 완화해 기술지주회사의 투자유치, 투자역량 강화

- 출연연 등 기술지주회사의 보유기술 제한(첨단·녹색기술) 폐지(기술이전법 개정)
- 출연연 등의 기술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50%→30%, 기술이전법 개정)
- 민간기업·VC 등 투자자, 정부·지자체 등 외부 출자 근거 신설 (기술이전법 개정)

자료: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22.12)

3.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주식 보유 요건 완화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20% 이상 보유’에서 ‘10% 이상 취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생략)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100분의 10 ----- 취득하여야 한다-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제21조의4¹⁵⁾에서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술지주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¹⁶⁾으로 정하는 기간(2년) 동안 출자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보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5(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과 유사하게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17)은 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기존의 주식 보유 요건을 ‘자회사의 설립 시’에만 10%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개정·시행18)되었음.

이는 자회사의 가치가 커질수록 자회사 의무 보유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는 대응투자 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자체 추가 자금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역설적으로 외부 투자를 거절하거나,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자회사 주식을 모두 매각19)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의무 보유지분율을 자회사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해당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임.

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④ 기술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술지주회사는 제외한다)는 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18) 2024.12.20. 개정, 2025.6.21. 시행

19) <조기 지분 매각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사례>

(서울대) 유망 AI스타트업에 1억 원 투자, 자회사 지분율을 지킬 수 없어 AI스타트업 지분 모두 처분, 이후 해당 자회사는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에 약2,300억 원에 매각 (연세대) 자회사인 ○○○가 외부투자, R&D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크게 성장시켜 코스닥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자회사 지분율 규정을 지킬 수 없어 지분을 모두 매각
--

자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201291, 2024.7.2. 김대식의 원대표발의)에 대한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p. 11)

개정안은 이러한 「산학협력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출자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2년 동안) 20% 이상 보유’하는 것에서 ‘10% 이상 취득’하는 것으로 완화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운영 부담을 줄이고, 출자회사의 설립과 이를 통한 기술 사업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만, 안 제21조의4제2항은 출자회사 주식을 일정 기간(2년) 동안 ‘보유’하도록 하는 요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동항 본문에서 주식의 의무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도 주식 ‘취득’에 맞춰 ‘출자회사 설립 시 또는 제3의 회사를 출자회사로 편입 시’ 등과 같이 ‘특정 시점’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을 통해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지주회사의 주식 보유 요건이 완화될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부담 감소로 외부 투자가 확대되어 출자회사 설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출자지분의 처분을 통한 기술지주회사의 수익 회수 가능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참고로 정부는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22.12)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자회사가 운영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 의무 지분보유 비율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공공연의 첨단기술 창업 요람化>

□ (규제 완화) 기술지주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설립·운영 규제 완화 추진

* 출연연 등 - 첨단기술지주(근거: 기술이전법), 대학 - 산학연기술지주(근거: 산학협력법)

○ 시장원리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자회사가 운영되도록 자율성 확대

• 자회사 의무 지분보유 비율* 완화 (기술이전법, 산학협력법 개정)

* (현행) 출연연 등 기술지주 20%, 대학 기술지주 10% → (개선안) 최초 출자시 10%

자료: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22.12)

4.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업무에 ① 제3의 회사나 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술의 이전·사업화 업무와 ② 제3의 회사나 기관·단체로부터 기술의 이전·사업화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 ----- -.
1.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u>기술이전·사업화</u>	1. ----- ----- ----- <u>기술 또는 제3의 회사나 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술의 이전·사업화</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u>제3의 회사나 기관·단체로부터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위탁받은 업무</u>
6. 제1호부터 <u>제5호까지의 규정</u> 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 <u>제6호까지</u> ----- ----- -----

현행법 제21조의5²⁰⁾는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의 기술 및 경영 자문 등으로 규정하면서,

그 중 기술의 이전·사업화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연구기관이나 그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또는 출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업무 범위를 ① 제3의 회사·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술의 이전·사업화 업무와 ② 제3의 회사·기관·단체로부터 기술의 이전·사업화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업무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다양한 기술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이와 유사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산학협력법」²¹⁾은 산학연협력기술

2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3.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의 기술 및 경영 자문
4. 출자회사에 대한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투자 또는 투자의 유치
5.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해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동법 시행령²²⁾에서 그 업무의 범위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기관(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자체 보유한 기술의 이전·사업화 중개 업무로 한정하였으나, 최근 시행령 개정(2025. 6.)을 통해 그 업무의 범위를 다른 산업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 바 있음.

이러한 타 입법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뿐만 아니라 제3의 회사·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산업통상자원부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2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16. 4. 12., 2025. 6. 2.>

10.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나.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방식 및 사업화 지원비용의 수취 근거 등 명시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술을 양도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을 통하여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술의 사업화 지원 비용의 수취 근거와 기술료 및 사업화 지원비용의 납부·수취 수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 ③ (생략)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기업</u>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u>있으며</u> ,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u>있다</u> .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양도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락 등을 통하여 기업</u> ----- ----- ----- ----- <u>있고</u> ----- ----- ----- ----- -----

<신 설> ⑤ · ⑥ (생 략) ⑦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 <u>절차·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u>, 제5항에 따른 우선권, 제6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있으며,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 때에는 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른 기술료 및 사업화 지원비용은 현금, 어음, 주식, 채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 ----- -----절차·조건, 기술료의 징수 및 사업화 지원비용의 수취, 제6항-----제7항----- -----.
--	--

현행법 제24조²³⁾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귀속된

2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기업(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규정 하면서,

동법 시행령²⁴⁾에서 공공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허락하는 경우 통상실시권(사용권)²⁵⁾의 허락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용실시권(사용권)²⁶⁾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⁷⁾.

그러나 통상실시권(사용권)의 경우 비독점적인 채권으로 복수의 대상자에게 동시에 실시권(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어 기술의 확산에는

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제9조제3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의 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가 기술진흥원에 등록된 날부터 1년(신속한 기술이전·사업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 **통상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동일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중복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26) **전용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 지역, 내용 등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7) 2023년 통상실시권 및 전용실시권 허락 연간 사례 현황

구분	통상실시	전용실시
건수	4,792	710

* 자료: 2024년도('23년도 대상)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후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등 선도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는 불리한 측면이 있어 기술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특성이나 수요기업의 기술 활용계획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에 대한 공공기술의 이전 방식을 양도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 등으로 선택·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미국²⁸⁾, 일본²⁹⁾ 등 주요 국가에서도 공공기술의 이전 방식을 입법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의 특성 등에 따라 적합한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술의 활용도 및 사업화 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한편, 현행법은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

28)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신청시 “독점 실시(Exclusive Commercialization License)”와 “비독점 실시(Non-Exclusive Commercialization License)”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29) 일본의 경우에도 통상실시 원칙을 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특정대학 기술이전사업 실시에 관한 지침」에서 통상 실시는 물론 양도, 전용실시 허여를 통해 수익의 실현을 도모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3. 특허권 등에 대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실시허락 등

- 대학이나 연구자로부터 양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회로배치이용권 등과 관련한 발명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실시하는 일 없이, 기업화의 의사가 있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도, 전용 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을 실시해, 해당 발명 등의 기업화를 통한 효율적인 수익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

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취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공공연구기관이 사업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기업 등에게 관련 컨설팅이나 투자 유치 등의 서비스 공급을 통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경우 기업 등으로부터 관련 소요 비용을 수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기술 사업화를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인·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사업화 지원 비용을 해당 수혜기업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후속 사업화에까지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사업화 성공률이 제고될 경우 해당 기업의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의 입장에서 기술사업화로 인한 기술료 수입이 증대³⁰⁾되어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사업의 선순환구조(연구개발→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연구개발 재투자)를 구축하는 데에

30) 기술이전의 대가인 기술료 중 '경상기술료'의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 또는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받는 방식이므로,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공공연구기관의 수익도 증가하게 되는 구조임.

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정부는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22.12)에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 특성, 현장 수요,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해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기술이전의 대가인 기술료와 별개로 사업화 지원의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선도자(First Mover) 육성을 위한 기술거래 촉진>

□ (기술이전 제도) 혁신적 투자를 속도감(speed-of-business)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여년 만에 공공연 기술이전 제도 전면 개편

- 추격성장 시대에 적합한 통상실시 원칙, 예외적 전용실시의 경우 적용되는 유보기간(6~12개월) 폐지
- 공공연이 기술 특성, 현장 수요,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해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 방식 자율 결정

□ (사업화 유인) 기술이전 대가인 기술료와 별개로 사업화 지원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 도입(기술이전법)

- 공공연이 기술이전 계약과 별개로 사업화 지원(컨설팅, 투자유치 등 기술이전 외 서비스 공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
 - *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이 동일 계약에서 체결되는 경우, 각각의 대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
- 사업화 지원 대가는 현금 외 주식, 채권, 어음, 주식매수선택권 등이 가능하도록 명시적 근거 마련

자료: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22.12)

6.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에 민간기업 등 포함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 ----- -----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삭제>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 ---조직, 기술능력 및 자본금---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제2조³¹⁾에서 ‘기술신탁관리업’을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3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통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을 수행하는 업(業)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신탁관리 제도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신탁받아 다른 기업 등에 이전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기술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임³²⁾.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현행법 제35조의²³³⁾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이하 생략)

32) 전용·통상실시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신탁관리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먼저 마련(2008.3.)되었으며,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신탁재산의 범위가 등록 및 출원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2010.4.)되었음.

3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5.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③~⑧ (생략)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자에 한해서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음.

그런데, 기술등의 특허료·등록료 등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권리 유지비용에 비하여 기술의 이전·사업화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아 금융투자업자의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25년 9월 현재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5개 공공기관³⁴⁾의 경우에도 신탁 및 이전 실적이 점차 감소해왔으며, 특히 2019~2022년에는 기술보증기금을 제외한 기관의 신탁관리실적이 전무하였음³⁵⁾.

연도별 기술신탁관리 실적(2010~2024)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탁건수	719	531	338	303	244	87	108	112
이전건수	10	17	32	13	35	9	3	5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탁건수	0	219*	317*	412*	464*	584	695	
이전건수	0	40*	56*	50*	64*	57*	54*	

* 2019~2022년의 신탁 실적과 2019~2024년의 이전 실적은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실적임.
(2023~2024년의 신탁 실적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실적(각각 64건, 199건)이 포함됨)

34)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및 기술보증기금의 총 5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3년~2021년까지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하였으나 2021년 말 폐업의 형식으로 허가를 반납하였음.

35) 기술신탁제도 도입 이후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해 5년간(2010~2014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기술신탁관리기관 운영지원사업'의 종료 후, 대부분의 기술신탁관리기관 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탁관리기관 허가(2018.10.) 이후 2019년부터 실적이 다시 발생하였음.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2022년까지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관련 부대업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2023년부터 공공연, 대학, 민간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직접 기술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음.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또는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등³⁶⁾ 이미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 중에는 기술신탁관리를 희망하는 기관들이 있으나³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이 엄격하여³⁸⁾ 기술신탁관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민간기업 등 영리기관에 대해서도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술

36)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기술평가기관 지정 제도 개요>

기관 유형	구분	내용
기술거래기관 (법 제10조)	사업 범위	-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조사, 분석 및 평가 - 기술이전·사업화 정보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기술이전 중개·알선
	지정 요건	-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3명 이상의 전담 인력 상시 고용 - 기술거래 업무지침서 및 기술이전·사업화 정보망 보유
	지정 현황	총 164개사 (공공기관 21개, 테크노파크 19개, 민간기업 124개)
사업화전문회사 (법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사업 범위	-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개발·융합 등의 지원 -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지정 요건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5명 상시 고용(기술거래사 2명 필수) - 3년간 15건 이상의 사업화 실적 및 사업화 관련 정보망 보유
	지정 현황	총 53개사 (민간기업 53개)
기술평가기관 (법 제35조)	사업 범위	-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수요 조사·분석 - 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지정 요건	-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3명 이상 +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조직, 기술평가모델, 기술평가 정보망 보유
	지정 현황	총 34개사 (공공기관 20개, 민간기업 14개)

37)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기업 43개사(기술거래기관 31개사, 사업화전문회사 12개사)를 대상으로 기술신탁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28개사(65%)가 참여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2022, 자체조사).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일 것, ② 인가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③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인력·전산설비·물적설비를 보유할 것, ④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출 것 등의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함.

신탁관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허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술신탁관리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영리기관에 대해서도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수행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다양한 기술의 활용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³⁹⁾.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규칙⁴⁰⁾에서 기술신탁관리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능력 등을 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 한해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당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충분한 재정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기관의 기술신탁 업무수행으로 인한 기술보유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임.

39) 기술신탁관리가 활성화될 경우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 및 이용자 등에게 수수료 및 신탁보수 등을 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② 기술보유자는 기술신탁 시 특허료·등록료 등 권리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미활용 기술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 ③ 국가적으로는 기술패키징 등을 통해 잠재력 있는 기술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4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등의 선별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술능력과 기술신탁관리업을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제7조(인력요건 등) ①~③ (생략)

④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정능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영업보증금 1억원을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참고로 정부는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22.12)에서 기술신탁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일부 영리법인까지 허가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⁴¹⁾.

<선도자(First Mover) 육성을 위한 기술거래 촉진>

□ (기술신탁)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까지 확대 검토(기술이전법 개정)

○ 기술거래·평가, 사업화 컨설팅 등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일부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기관 참여를 허용

* (현행) 비영리기관만 허용 → (개선) 기술이전법상 기술거래·평가기관, 사업화전문회사를 추가하되, 기술 신탁자 보호를 위해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

자료: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22.12)

41) 다만, 기술신탁관리기관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기술의 유지비용 대비 기술거래를 통한 수익이 크지 않은 현재의 구조가 지속될 경우 민간 시장에서 기술신탁관리가 자생적으로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패키징 등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추진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7.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정비

개정안은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① 스스로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와 ② 폐업 등으로 인해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추가하고,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③ 허가받은 후 2년간 실적 없는 경우와 ④ 허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① ----- ----- ----- ----- ----- -----제5호-----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스스로 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설>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6.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기술신탁관

<신 설> 4. ~ 7. (생 략) ② (생 략)	<u>리 실적이 없는 경우</u> 7.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 <u>에 미달하게 된 경우</u> 8. ~ 11.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 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제35조의7⁴²⁾에서 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허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④ 승인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나 ⑤ 기술등의 목록 비치·공고 및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자료제출·보고를 미이행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⑦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4.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① 스스로 허가의 취소를 원하거나 ②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안 제35조의7제1항 제4호 및 제5호),

③ 허가 이후 2년간 기술신탁관리 실적이 없거나 ④ 허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7제1항 제6호 및 제7호).

현행법 및 개정안의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허가 취소	-(1호)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좌동
	-(2호) 임원·대표자의 결격사유 발생 / 주소 국외 이전 / 허가 취소 후 3년 미경과	좌동
	-(3호) 업무정지기간에 영업 계속	좌동
	-	-스스로 허가 취소 희망
	-	-폐업 등으로 사업수행 불가
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 이내)	-(4호)승인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 수령	좌동
	-(5호)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 비치·공고 의무 위반 / 적절한 기간 내 정보제공 의무 위반	좌동
	-(6호)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실적·사업계획에 관한 자료제출 및 보고 미이행 또는 거짓 이행	좌동
	-(7호)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명령 미이행	좌동
	-	-허가 이후 2년간 실적 전무
	-	-허가 요건 미달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리기관의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관 또는 장기간 실적이 없거나 허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기관 등도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과거에 기술신탁관리기관이 폐업의 형식으로 허가를 반납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할 때⁴³⁾, 스스로 사업의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허가를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의 경우에도 ①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거나 ② 폐업 등으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③ 지정 이후 2년간 실적이 없거나 ④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⁴⁴⁾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의한 각종 허가 및 지정의 취소 사유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경우 2013년도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취득하였으나 2016년 이후로 신탁 실적이 없었으며, 2021년말 폐업을 통보하는 형식으로 허가를 반납하였음.

4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현행법상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기관별 지정취소 사유

구분	취소요건
기술거래기관 (제10조제3항)	1. <u>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u> 2.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3. <u>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4. <u>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u> 5. <u>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u> 6. <u>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u>
사업화전문회사 (제12조의2제2항)	1. <u>지정된 후 2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u> 2.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3. <u>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4. <u>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u> 5. <u>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u> 6. <u>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u>
기술평가기관 (제35조제3항)	1. <u>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u> 2.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3. <u>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4. <u>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u> 5. <u>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u> 6. <u>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u>

다만, 현행법 제35조의8⁴⁵⁾에서는 제35조의7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제35조의7제4호~제7호)에 해당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나, 그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업무정지처분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4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8(과징금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35조의7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조문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업무정지 사유를 반영하여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57